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05호

발의년월일 : 2021년 4월 29일
발 의 자 : 유영주 의원
찬 성 자 : 서병완, 최재란, 임정옥, 정택진, 박종호, 이수옥, 윤인숙, 정순희 의원 (8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입주기업 선정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 우선구매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5. 1. ~ 2021. 5.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2.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제품·용역의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2.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제공
3.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영·기술·회계·노무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4.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지원
5.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창업지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입주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입주 포기 또는 계약해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법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